
Policy and Law Report _Vol.8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4.19 ~ 4.25) -

April 26,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입법예고 현황, 정부부처 및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간 일정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일정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함 중점 추진 과제로는 ①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추진동향 및 추가대응, ②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추진방안, ③ ‘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있음	2021-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뉴딜 펀드투자 확대 및 우수 기업 발굴 등의 협력을 위한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력』 MOU를 체결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내 ICT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뉴딜 투자 확대, ② 디지털뉴딜 산업 분야의 전문투자자와 수요기업간 정보공유 및 전략적 연계 확대, ③ 디지털뉴딜 산업 분야별 유망기업 발굴·정보 공유 등 ICT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 등이 있음 < 업무협약 기관별 역할 > <table> <tr> <th>구분</th><th>기관</th><th>주요 역할</th></tr> <tr> <td rowspan="2">직접 투자</td><td>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td><td>• 금년도 우체국보험 VC 출자(600억원) 시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운용사를 선정</td></tr> <tr> <td>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td><td>• KIF 투자(450억원) 운용사 선정 시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 하는 운용사에 가산점 부여</td></tr> <tr> <td rowspan="3">기업 발굴 · 투자 유치</td><td>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td><td>• 디지털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 투자자와 연계 및 정보공유 * (B2G)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지원</td></tr> <tr> <td>한국벤처캐피탈협회</td><td>• 회원사 대상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td></tr> <tr> <td>IT투자협의회</td><td>• 회원사 대상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td></tr> </table>	구분	기관	주요 역할	직접 투자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 금년도 우체국보험 VC 출자(600억원) 시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운용사를 선정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KIF 투자(450억원) 운용사 선정 시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 하는 운용사에 가산점 부여	기업 발굴 · 투자 유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디지털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 투자자와 연계 및 정보공유 * (B2G)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회원사 대상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	IT투자협의회	• 회원사 대상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	2021-04-22
구분	기관	주요 역할															
직접 투자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 금년도 우체국보험 VC 출자(600억원) 시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운용사를 선정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KIF 투자(450억원) 운용사 선정 시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 하는 운용사에 가산점 부여															
기업 발굴 · 투자 유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디지털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 투자자와 연계 및 정보공유 * (B2G)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회원사 대상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															
	IT투자협의회	• 회원사 대상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통한 공공기관 판로지원 등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를 개최하기로 함 (2021. 9. 1~9. 3, 일산 킨텍스) 이번 경연은 스마트안전, 건설자동화, 로봇틱스, 사물인터넷(IoT) · 인공지능(AI) · 센싱,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스마트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장비(HW)와 안전관리시스템(SW)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기술 분야, ② (건설자동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건설기계,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 및 시공관리 관련 제품 · 장비 및 기술 분야, ③ (로봇틱스)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로봇, 드론 등의 기계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SW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분야 무인화 및 스마트 시공 ·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분야, ④ (IoT · AI · 스마트 센싱)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센서 등을 활용한 주요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기술 등 분야, ⑤ (BIM SW Liv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BIM SW 관련 우수성과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사례의 2개 부문 등이 있음 ※ 참가신청: http://www.smartconstchallenge.com (4/23~5/31)	2021-04-22
산업통상 자원부	•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 탄소중립, K-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최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에서는 3천 3백여개 기업 대상의 심층 패널 분석과 약 2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 현장의 여건과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전략기술과 유망 신산업, R&D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혁신 전략 및 정책 과제와 이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성장 목표치를 가시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2021-04-22
금융 위원회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지난 ‘19년 5월 발표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교류차단대상정보 중 예외적으로 교류를 허용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안 제4-6조제1항), ②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총괄 · 집행책임자로서 직원 지정을 허용(안 제4-6조제2항) 등이 있음	2021-04-21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 재정부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현행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최근 옥수수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옥수수 생산량은 줄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확대됨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옥수수의 1차 가공품인 전분 및 전분당 제품의 국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옥수수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021-04-23
산업통상 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4-23
공정거래 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021-04-20

특허청	• 「<u>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u>」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위반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29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시정권고 미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관련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4-20
-----	--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부	•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등으로 인해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안 제22조제2항 신설), ②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체제 감면(안 제27조제6항 신설) 등이 있음 ※ 의견제출기간 : 2021. 4. 20. ~ 2021. 5. 31.	2021-04-20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②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안 제63조제2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④ 규제외의 재검토 사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안 제66조의2제9호 신설) 등이 있음 ※ 의견제출기간 : 2021. 4. 21. ~ 2021. 5. 31.	2021-04-21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관련 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 촉진 및 등록 편의성을 제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제조물품을 등록하였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22조), ②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14조 제2항) 등이 있음 ※ 의견제출기간 : 2021. 4. 22. ~ 2021. 5. 12.	2021-04-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의 소 제기 요건을 현행 모회사 지분 50% 초과에서 100%로 강화하여 소송 제기 요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자회사의 주주 권한이 모회사 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해야 하며, 특히 최대주주는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경우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하여 의결권 3% 제한이 적용됨. 이와 달리 경영권을 공격할 목적의 헤지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세력들은 단기간에 여러 개별주주 명의로 3% 미만의 주식을 분산 취득하여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현행규정의 흠결을 막고자 함 주요 내용은 ①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보유한 완전모회사 관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다중대표소송 제기가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다중대표소송 제기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안 제406조의2) ②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함(안 제542조의12제4항 단서 신설)	2021-04-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대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면 대규모의 단주(端株)가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비율 미만의 소수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병합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9조, 제443조 및 제441조의2 신설)	2021-04-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최근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 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이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함.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2021-04-22
정무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원사업자가 건설업자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여서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실정임 동 개정안은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2021-04-21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2인)」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최근 다양한 미디어매체 시장의 형성과 블로그, 카페, SNS 등 여러 광고 수단의 등장으로 전략적인 광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인력, 자본,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은 더욱 어려운 광고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 제품·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021-04-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u>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李壽珍)의원 등 10인)</u>」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안 제1조) ②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③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④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를 두어 근로자총회에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⑥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사항, 이 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안건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관한 추천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⑦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⑧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2021-04-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⑨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⑩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는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38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1-04-20

3. 국회 주간 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4/29(목) 14:00	제386(임사회) 제4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 참조		
국회사무처	4/3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	4/26(월)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 디지털 헬스	
	4/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 스톡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	
	4/27(화)	「현안, 외국에선?」 제10호 발간 -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	
국회 예산정책처	4/26(월)	「NABO 경제 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 현안:국채발행 확대가 시장이자율에 미칠 영향 진단 등 - 이슈:자산가격 변동의 민간소비 영향 국제 비교 등	
	주중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 예정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 입법조사처	4/28(수) 07:30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 - 주제: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 발제: 임혁백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온라인 세미나
	4/30(금) 10:00	「전문가 간담회」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 이진규 CPO(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4/30(금) 14:00	경찰 수사 조직 개편 관련 시리즈 간담회 2 -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금지 운영실태 및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국회 미래연구원	4/29(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7호 -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수준	
	5/13(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8호 - 국가의 민주적 질의 제고를 위한 개혁 아젠다	
	5/27(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9호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검토	
	5/27(목) 13:30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미래전략 수립과 활용: 성찰과 새로운 방향 제시	국회 회의실

[별첨1] 제386회 국회(4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위	4/28(수) 10:00	청문회	대법관(전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운영위	4/26(월) 14:00	국회운영개선소위	법안심사 등
	4/26(월) 15:00	전체회의	법안심사
법사위	4/27(화) 10:00	법안1소위	법안심사
	4/29(목)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정무위	4/26(월) 14:00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기재위	4/27(화) 14:00	전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
교육위	4/26(월) 15:00	전체회의	법안상정 등
	4/27(화) 09:30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4/28(수) 09:30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과방위	4/27(화) 10:00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법안심사
국방위	4/28(수) 14:00	전체회의	
행안위	4/26(월) 14:00	전체회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
문체위	4/27(화)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농해수위	4/27(화) 15:3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산자중기위	4/27(화)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심사
	4/28(수) 14:00	전체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의결
복지위	4/26(월) 14: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상정 등
	4/27(화) 10:00	제2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4/28(수) 10:00	제1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환노위	4/27(화)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4/27(화) 14:30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4/28(수)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기후위기 대응법안 관련
	4/28(수) 14:30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근로자 퇴직급여법안 관련
	4/29(목) 10:00	전체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심사
국토위	4/27(화) 10:00	전체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상정
	4/28(수)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여가위	4/30(금) 14:00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성평등 국회 운영을 위한 상설 지원기구 설치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6(월) 14:00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구축을 위한 토론회	김희재, 하영제 의원실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
4/26(월) 14:20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가업승계 정책 토론회	김경만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
4/27(화) 07:30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강득구 의원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TV 생중계
4/27(화) 10:00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도종환 의원실, 국회관광산업포럼 외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
4/27(화) 15:00	감염병예방법(스마트방역법) 국회 통과 기념세미나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조명희 의원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조명희TV 생중계
4/30(금) 10:00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환경부	이룸센터 2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주요 일정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0(화) 10:0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II	박용진, 민병덕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	참여연대 2층
4/20(화) 10:00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변재일, 윤영찬 의원실	변재일TV 생중계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